



16일 정재원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배리 피셔 변호사(오른쪽)가 주항소법원이 내린 판결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피셔 변호사, 원고 정재원씨, 신혜원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크리스 김 변호사. <신현식 기자>

강제징용 소송 새 국면

가주항소법원 “손해배상법 위헌 아니다”
계류중인 한인케이스 등에 긍정적 영향

강제징용 소송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그동안 주요 이슈로 제기돼 왔던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별법(헤이든법)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LA민사지법에 계류중인 2건의 한인 케이스(미쓰비시사 대 박흥복씨, 미쓰이사 대 안성균씨)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 중단됐거나 미결상태에 놓여져 있는 수십 개의 징용관련 소송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의미= 정재원(80·LA)씨의 오노다 시멘트(현 다이헤이요)를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주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1년 9월 LA민사지법의 피터 리크만 판사의 소송기각 요청을 거부한 사건에 이은 낭보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재판과 정도 정씨측 변호인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리 피셔 변호사는 16일 라디오코리아 도산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돼 있는 징용관련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셔 변호사는 특히 주 항소법원이 헤이든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상 중국과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유사한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노다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노다측 변호인단과 일본 기업은 정부의 막후 지원을 업고 미국 국무부에 치열한 로비를 벌이

고 있는 데다 이번 결정에 불복해 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피셔 변호사는 “소송 진행을 막으려는 오노다측과 미국 정부의 압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의 재판방향= 정씨측 변호인단은 앞으로 이 케이스를 단시간내로 최종재판에 까지 이르게 해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혜원 변호사는 “정재원씨를 포함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한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며 “빠른 시간내로 재판 준비를 마쳐 본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씨 변호인단은 이에 따라 현재 일부만 허가된 증거수집 절차가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판을 속개하도록 주지법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